#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52

발의연월일: 2021. 2. 5.

발 의 자:오영훈·남인순·서영교

양정숙 • 우원식 • 위성곤

이개호 • 이성만 • 이타희

이해식 • 전혜숙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음.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적 자원을 보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 목적과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85조의2제1항제4호"를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90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제한) ①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	
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	
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	
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	
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	
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	2
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	
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	
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	

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 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u>제85조의2제1항제4호</u>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③ (생 략)